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강용인	580919	전남 순천시
김우하	700801	충북 진천군
김행정	630226	경남 김해시
김현하	960624	경기 용인시
박수임	691123	경남 양산시
박영삼	750703	경기 안산시
유미연	720927	대구광역시 동구
이도겸	810116	경기 수원시
정수철	660320	대구광역시 동구
조석환	811206	대구광역시 달서구
최애순	590327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